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산림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송미령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행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은 과태료 금액의 1/2 범위에서 경감 또는 가중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과 체납자의 감경 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과태료 부과기준에 감경 및 가중 사유 등을 규정(안 제36조 [별표])

- 1)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반기준에 감경 및 가중 사유를 명시하고,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함
- 2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본딴말의 준말을 정비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등과 협의예정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 : 예정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표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가목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위반행위란 나목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위반행위란 다목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라목 위반행위란 라목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한다.

1. 일반기준

가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는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

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과태료 부과기준 (제3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는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령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지 <u>않은 경우</u>	법 제44조제1항제1호	1,000만원
나.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·관리하지 <u>않은 경우</u>	법 제44조제1항제2호	1,000만원
다.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지 <u>않은 경우</u>	법 제44조제1항제2호	500만원
라.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	법 제44조제1항제3호	1,000만원

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<u>않은</u> 경 우		
마. 조합의 조합장·상임이사 또는 관리인·청 산인이 법 제11조제2항·제6항을 위반한 경 우	법 제44조제2항	500만원
바. 조합의 조합장·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44조제3항	100만원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155